**○○ 합자회사 정관**

**제 1 장 총 칙**

**제1조【목 적】**

본 회사는 ○○사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【상 호】**

본사는 ○○합자회사라 칭한다.

**제3조【본점 및 지점소재지】**

본사의 본점을 ◆◆시에 두고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.

**제 2 장 사원 및 출자**

**제4조【사원과 출자내역】**

사원의 성명, 주소 그 출자목적, 평가의 표준 및 책임을 다음과 같이한다.

1. 금, ○○○○ 원 무한

주 소 성명 ○○○

1. 금, ○○○○ 원 무한

주 소 성명 ○○○

1. 노무, (회사를 위하여 ○○을 한다) 이에 대한 평가의 표준 1년 금 원 무한

주 소 성명 ○○○

1. 신용, 이 가격 금 ○○○ 원 무한

주 소 성명 ○○○

1. 금, ○○○○ 원 유한

주 소 성명 ○○○

1. 금, ○○○○ 원 유한

주 소 성명 ○○○

1. 부동산(○시 ○구 ○동 ○번지 대지 ○○평), 이 가격 금 ○○○ 원 유한

주 소 성명 ○○○

**제 3 장 업무의 집행 및 회사의 대표**

**제5조【업무의 집행】**

본사의 업무는 무한책임사원(업무집행사원)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써 집행한다.

**제6조【업무집행사원】**

업무집행사원은 ○명으로 하고 총사원의 동의로써 무한책임사원중에서 선임한다.

**제7조【업무집행사원의 임기】**

업무집행사원의 임기는 ○년으로 한다. 단 재선될 수 있다.

**제8조【업무집행사원의 보수】**

업무집행사원의 보수는 사원의 결의로써 정한다.

**제9조【회사의 대표】**

무한책임사원(업무책임사원)은 회사를 대표한다.

**제10조【유한책임사원】**

유한책임사원은 본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또는 본사를 대표할 수 없다.

**제 4 장 계 산**

**제11조【사업연도】**

본사의 사업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○월 ○일에 시작하여 익년 ○월 ○일을 종기로 한다.

**제12조【무한 책임사원의 계산보고의무】**

무한책임사원(업무집행사원)은 사업년도말에 계산을 하고 다음에 열기하는 서류를 사원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.

1. 재산목록

2. 대차대조표

3. 영업보고서

4. 손익계산서

**제13조【이익의 배당】**

① 본사의 손익계산은 1사업년도에 있어서 총익금중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차액을 순익금으로 하고, 총손금중에서 총익금을 공제한 차액을 결손금으로 한다.

② 본사는 결손금을 보전한 뒤가 아니면 이익의 배당을 할 수가 없다.

③ 본사는 사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 이익금을 출자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한다.

**제14조【무한책임사원의 보고의무】**

무한책임사원(업무집행사원)은 전조의 시기 외라 하더라도 본사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이를 사원총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**제15조【유한책임사원의 권리】**

유한책임사원은 사업연도말에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본사의 영업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가 있다.

**제16조【손해분담의 비율】**

각 사원의 손해분담의 비율은 제4조에 열기한 출자액에 의한다. 단 유한책임사원의 손실의 부담은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것 이외에 미치지 않는다.

**제 5 장 사원의 퇴사**

**제17조【퇴 사】**

사원은 상법에 규정하는 퇴사의 사유 이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.

1. ××

1. ××

**제18조【출자지분의 환급】**

노무 또는 신용으로써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퇴사의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.

**제 6 장 해 산**

**제19조【존립기간】**

본사의 존립기간은 정관작성일부터 ○년간으로 한다.

**제20조【해산사유】**

본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.

1. 존립기간의 만료,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

2. 총사원의 동의

3. 합 병

4.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의 퇴사 또는 사원이 1인으로 된 때

5. 파 산

6.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판결

**제21조【회사의 계속】**

전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원의 일부의 동의로써 본 회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. 단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한다.

**제22조【합 병】**

본 회사의 합병은 전사원의 동의로써 하는 것으로 한다.

**제 7 장 청 산**

**제23조【청산인】**

본 회사 해산의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은 무한책임사원 (영업집행사원)이 하는 것으로 한다.

**제24조【잔여재산분배】**

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.

**제25조【정관 작성연월일】**

본 정관은 ○년 ○월 ○일 작성하였다. ○○합자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총사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.

○○년 ○월 ○일

○ ○ ○ 󰄫

○ ○ ○ 󰄫

○ ○ ○ 󰄫